

『하나 플러스 통장』 특약

제1조 약관의 적용

“하나 플러스 통장”(이하 ‘이 예금’이라 한다)의 거래에는 본 특약을 적용하고, 본 특약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『예금거래 기본약관』,

『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』 및 개별 계좌의 해당 예금별 거래약관을 적용합니다.

제2조 상품의 가입

① 이 예금은 하나은행의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는 서비스를 통하거나, 영업점에서 예금주의 요청에 의해 신규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② 하나은행은 제휴사의 애플리케이션 등에 연계하여 하나은행의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, 제휴사는

“간편결제 제휴사” (공동마케팅을 위해 하나은행과 협약을 체결한 법인을 “간편결제 제휴사”라 한다)를 포함합니다.

제3조 상품명

① 하나은행의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는 서비스를 통하거나, 제8조의 방법으로 거래하기 위하여 영업점에서 예금주의 요청에 의해

신규 가입하는 상품명은 “하나 플러스 통장”으로 합니다.

② 제2조 제1항에 따라 제휴사의 애플리케이션 등에 연계하여 하나은행의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는 서비스를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는

상품명 중 “플러스”는 생략할 수 있으며, “하나(제휴사명)통장” 등의 상품명으로 협약한 제휴사명 또는 제휴사에서 요청하는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제4조 예금과목

이 예금은 보통예금 및 저축예금으로 합니다.

제5조 가입대상 및 제한

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이며, 제휴사별로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제6조 이자율 적용

① 이 예금의 이자율은 예금 보유일 현재 영업점이나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예금과목의 개별상품 기본금리에 우대금리를 더하여 적용합니다.

② 은행거래 실적에 따라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을 하나 플러스 통장으로 전환 시 하나 플러스 통장의 우대 금리는 제공되지 않고 최초 상품의 우대금리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

③ 이 예금의 우대금리는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변경사유, 변경내용 등을 변경 시행일 전 1개월 동안 영업점

이나 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.

제7조 가입 및 전환 방법

① 이 예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.

가. 하나은행의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통한 신규 가입

나. 제휴사 애플리케이션 등에 연계된 하나은행의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통한 신규 가입

다. 영업점에서 예금주 요청에 따른 신규가입

② 통장을 발급하는 다른 예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통장을 발급하지 않는 “하나 플러스 통장”으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.

가. 영업점에서 예금주 요청에 따른 전환

나. 예금주가 인터넷뱅킹(스마트폰뱅킹 포함), 콜센터를 이용하여 전환

제8조 거래방법

이 예금의 거래 방법은 인터넷뱅킹(스마트폰뱅킹 포함), 폰뱅킹 및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거래에 한합니다.

제9조 통장발급

① 이 예금은 통장을 발급하지 않으며, 전환된 계좌는 이전의 통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② 예금주가 이 예금의 통장발급을 요청할 경우 은행은 요청일 당시 고시된 수수료를 부과 후 통장을 발급합니다.

제10조 제휴사 이벤트

제휴사별 별도 이벤트가 시행될 경우, 해당 이벤트 내용을 제2조에서 협약을 체결한 제휴사의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게시합니다